

영등포구보

공포(규칙)

- 제57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입 법 예 고

- 제56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 제58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19

고 시

- 제35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24
- 제36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25

인사발령

- 6월 21일자 2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내사랑영등포→영등포행정→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02)2670-3059 / 전송 : (02)2670-3579
-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공포(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라 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라 함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 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3. 공개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약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 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 제3호에 의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

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5조(금고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10) (20)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6) (5) (4) (3)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6)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 (6) (6) (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나.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부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이상으로 하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에 있어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하한을 배점상한의 60%미만으로 할 수 있고, 등급별 점수편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점)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에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6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6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6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점)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564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및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A형간염 대유행과 주의보에 따라 A형 간염검사를 신설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건소 무료접종 확대에 따른 유료접종의 일부 종목을 폐지하며, 조례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2조제2항(수수료 및 진료비) 각호 일부 수정 및 삭제.
- 나. 제2조제2항 [별표]중 제3호 “유료접종”란의 일부 접종종목 삭제 및 수정.
- 다. 제2조제2항 [별표]중 제4호 “검사”란의 “가. 간염검사”를 “A형 및 B형, C형간염검사”로 구분.
- 라. A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당해연도 검사시약 원가구매가격으로 함.
- 마. B형, C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에 준함.
- 바. 제3조제2항(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7호 “65세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신설.
- 사. 해당 조문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의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청 의약과 (전화 : 2670 - 4816, FAX : 2670 - 4877)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5. 검사
6. 구강보건실 진료비
7. 측정 수수료

제3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을 “제2조제2항의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각 호 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을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우대 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제7호에 따라”로,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을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약을”로 한다.

7.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수 수 료 액 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수 첩 및 진단 서, 제증명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건강진단수첩과 건강 진단서를 동시에 발 급할 경우의 수수료 는 '사'항에 '카'항을 더한 수수료액 으로 한다.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마.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수첩 또 는 진단서	1통	위생분야종사자들의건강진단규 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액	
	아.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차. 결핵진단서	1통	300원	
	카.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 명서	1통	300원	
	타.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파. 1통초과 발급	1통	100원	
	하. 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1매(CD)	3,000원	
2. 항결핵제보급	○ 초치료 처방		2,000원 2,000원	
	에탐부톨+아이이나+피라 지나미드+ 리팜피신 6	1인 1개월분		
	에스엠+아이이나+리팜 피신+피라지 나미드 6	1인 1개월분		
	에탐부톨+아이이나+리팜피신 9	1인 1개월분		
	에스엠+아이이나+리팜피신 9	1인 1개월분		
	에탐부톨+아이이나+리팜피신 6	1인 1개월분		
	에스엠+아이이나+리팜피신 6	1인 1개월분		
	○ 재치료 처방			
	피라지나미드+파스+에스엠	1인 1개월분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리팜피신	1인 1개월분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카나마이신	1인 1개월분		
	피라지나미드+리팜피신+카나마이신	1인 1개월분		
	에탐부톨+리팜피신+카나마이신	1인 1개월분		
	에탐부톨+피라지나미드	1인 1개월분		
에탐부톨+리팜피신 리팜피신+피라 지나미드+에탐부톨	1인 1개월분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3. 유료접종	가. B형 간염 접종 1) 성인 2) 소아	1ml 0.5ml	가. 보건소의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내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내의 경우에는 100원 으로 한다. 나. 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 수수료는 약품공급가격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일본 뇌염접종은 피하 근육주사를 적용한다. 단, 10자리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준한다.	
	나. 장티푸스	0.5ml	다. 전향에 의한지정 병의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회 공급 총액의 10자리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다. 신증후군출혈열	0.5ml	금액은 위의 가-다항과 동일함.	
	라. 인플루엔자	0.5ml		
4. 검사	가. 간염검사 1) A형 간염검사	1회	검사 수수료는 당해 연도 검사시약 원가구매가격 (검사시약비 + 재료비) 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의 경우, 1원이상 49원까지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한다.	
	2) B형 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 (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에 준한다.	
	3) C형 간염검사	1회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 에 한한다.
	다. 암표지자검사			
	· AFP	1회	6,000원	
	· CEA	1회	6,000원	
	· PSA	1회	6,000원	
	· CA125	1회	6,000원	
5. 구강보건실 진료비	가. 불소도포 진료비	1회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 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 수료	단, 시·술 상· 하약 당 1회로 산정한다.
6. 측정 수수료	가. 체력측정 수수료	1회	3,300원	비의료보험 적용대 상임
	나. 끝밀도 측정 수수료	1회	6,600원	비의료보험 적용대 상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p> <p>1. ~ 4 (생 략)</p> <p>5. 기타</p> <p>6. <u>구강보건과 진료비</u></p> <p>7. <u>체력측정 수수료</u></p> <p>8. <u>골밀도측정 수수료</u></p> <p>③ (생 략)</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 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 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1.~ 6.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7. (생 략)</p> <p>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 의료사업</p> <p>③ <u>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체력측정 및 골밀도측정 수수료는 구청장이 감면한다.</u></p> <p>④ <u>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u> 진료비를 면제하는 <u>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u>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p>	<p>제1조(목적) ----- <u>제14조에 따른</u> -----</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u>제42조에 따른</u> -----</p> <p>1.~ 4 (현행과 같음)</p> <p>5. <u>검사</u></p> <p>6. <u>구강보건실 진료비</u></p> <p>7. <u>측정 수수료</u></p> <p><u><삭 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 <u>제2조 별표 중 제3호에서 정한</u> -----</p> <p>② ---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p> <p>1.~ 6. (현행과 같음)</p> <p>7. <u>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③ <u>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우대 노인,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u>-----</p> <p>④ <u>제2항제7호에 따라</u>----- <u>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중 서울 특별시 거주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u> 약을 -----.</p>

현행수수료액표					개정안수수료액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건강진단 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삭제					<삭제>				
3. 항결핵제 보급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항결핵제 보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유료접종	가.일본 뇌염	1ml	(생략)	(생략)	3.유료접종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 신 1회분				<삭제>	<삭제>		
	다.간염	1ml				가.B형 간염 접종 1)성인 2)소아	1ml 0.5ml		
	라.장티 푸스	1인분				나.장티푸스	0.5ml		
	마.유행 성출혈열	0.5ml				다.신증후군출혈 열	0.5ml		
	바.렙토 스	1ml				<삭제>	<삭제>		
	파리중					<삭제>	<삭제>		
	사.디프 테리아	0.5ml (도스)				라.인플루엔자	0.5ml		
	아.인플 루엔자	0.5ml							
5.검사	가. 간염 검사	1회	당해연도의료 보험 요양급 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의과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		4.검사	가. 간염검사 1) A형 간염검 사	1회	검사 수수료 는 당해 연 도 검사시약 원가 구매가 격 (검사시 약비 +재료 비) 으로 한 다. 단, 10 자리 이하의 금액의 경우, 1원이상 49 원까지는 50원으로 하 고 51원이상 99원까지는	
						2) B형 간염검사 3) C형 간염검사	1회 1회		

현행수수료액표					개정안수수료액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00원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 (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에 준한다.	
	나. 수질 검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나. 수질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압표지자검사 (생략)	(생략)		(생략)		다. 압표지자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구강보건과 진료비	가. 치면 열구 전색 진료비	1회	보건소 초과 1회 방문당 수가 총 진료비 전액	비보험급여대상진료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산정	5. 구강보건실 진료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나. 불소도포 진료비	(생략)	(생략)	(생략)		가. 불소도포 진료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건강증진센터	가. 체력 측정 수수료	(생략)	(생략)	(생략)	6. 측정 수수료	가. 체력측정 수수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골밀도실	나. 골밀도 측정 수수료	(생략)	(생략)	(생략)		나. 골밀도 측정 수수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0-58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투명성 강화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지속적인 인식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객관화된 운영관리의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며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의 틀을 마련함은 물론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활성화 및 자발적 공익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나.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지원범위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접수·서류보완요구 (안 제7조)
- 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임기·기능 및 심의 회의 운영·회의록 작성·심의안건 관련 의견청취(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마. 지원사업 완료관련 사회단체장의 사업추진실적·정산관련 자료제출과 보고서류 및 장부검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안 제14조)
- 바. 사회단체장에 대한 교부결정사항 준수 및 위반 시 반환관련(안 제15조)
- 사. 보조금 교부 시 별도계정 설정 및 수입 지출관련 장부관리(안 제16조)
- 아. 심의 위원회 실비보상 및 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준용 (안 제17조,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주

민자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청 주민자치과 (☎2670-3173, FAX 2670-35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5조(지원범위) 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

른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제8조1항의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4급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과반수이상인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기타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회단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교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제5호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 2010 - 35 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아 래 -

대상 시설			지정 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일반 건축물 (주택)	영등포구신길3동 226-106	전 순 례	지붕 침하 파손 및 추가 붕괴 우려	E급	건축물 보수·보강, 개축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실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고시 제 2010-3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5-1지상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 6.24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 업 명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 가. 사업주체 : 정홍조 / (주)에이치알에이치 대표 박금옥
 - 나. 주 소 : 정홍조 강남구 개포동 653 현대(아)103-1302 / 박금옥 서초구 양재동 3-15
3. 시 공 자
 - 가. 상 호 : (주)에이치알에이치 대표 박금옥
 - 나. 주 소 : 서초구 양재동 3-15
4. 사업계획승인 현황
 - 가. 대지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5-1
 - 나. 대지면적 : 951.10m²
 - 다.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라. 사업규모 : 지하1층,10층 1개동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1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연 면 적 : 4,246.803m²
 - 바. 사 업 비 : 125억원
5. 사업시행기간 : 2010. 06. 28 ~ 2011. 08. 28
6.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건축과(☎2670-37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휴직발령

<발령번호 : 제106호>

일련 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김 인 영 (60.12.15)	행정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0.06.21부터 2010.09.20까지)			신길제7동	복지지원 팀 장	지방행정 주 사

(발령연월일 : 2010년 06월 21일자)